



#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

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,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, 우수환경산업체 지정·지원제도 시행,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 등 2011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편집부〉

## 1.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

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(☎ 02-2110-7930)

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포인트 지급 및 공공기관 할인 서비스 등이 탑재된 그린카드가 발급됩니다.

\* 7.1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, 체크카드, 멤버십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린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녹색생활 포인트 지급 그린카드 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탄소포인트] 전기, 수도, 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지급(연 최대 35,000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탄소포인트 강화] 전기, 수도, 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여 감축량 구간별로 더 높은 포인트 제공 [연 최대 70,000원]</li> <li>• [녹색소비 포인트] 녹색제품 구매시 제품가액의 1~5% 포인트 추가 제공 [연 20,000~30,000원 수준, 기업 제공]</li> <li>• 대상 제품명은 전용 홈페이지 게재 [www.greencard.or.kr]</li> </ul>	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[2011. 4. 5]  기후변화협력과 [02-2110-7930]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일반카드 혜택, 대중교통 특화] 녹색 소비·생활(대중교통 이용 등) 실천 시 추가 포인트 혜택 제공(연 최대 120,000원, 카드사 제공)</li> <li>•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등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 제공</li> <li>•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(총 20만원 수준)</li> </ul>	

## 2.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 용품의 안전관리 강화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(☎ 02-2110-6966)

환경보건법을 개정('11. 5 공포)하여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회수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.

\* 11월 20일 이후에는 어린이 용품의 제조·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시에는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.

구 분	중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위해성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해성이 큰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</li> <li>신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중전과 동일)</li> <li>위해성 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·제한(고시)</li> <li>고시 위반자에 대하여 판매금지 또는 회수 명령</li> </ul>	환경보건법 (2011. 11. 20)
		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02-2110-6966)

## 3. 우수환경산업체 지정·지원 제도 시행

환경부 환경산업팀(☎ 02-2110-7757)

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'우수환경산업체 지정·지원제도'가 시행됩니다.

\* 10. 29부터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해외시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 분	중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우수환경산업체 지정·지원제도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실적·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을 "우수환경산업체"로 지정하고 지원시책 마련</li> </ul>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(2011. 10. 29)
			환경부 환경산업팀 (02-2110-7757)

## 4.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축소

환경부 자연자원과(☎ 02-2110-6744)

생태계 보전 위주로 지정·관리되던 자연공원 용도지구를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포함한 용도지구로 지정·관리하고자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지설지구를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연공원용도지구를 개편합니다

구 분	중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개 용도지구</li> <li>- 공원자연보존지구</li> <li>- 공원자연환경지구</li> <li>- 공원자연마을지구</li> <li>- 공원밀집마을지구</li> <li>- 공원집단지설지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연공원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지설지구를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여,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불교의 역사·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의 신축·중축·개축 및 어족행위를 허용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	자연공원법 (2011. 10. 6)
			환경부 자연자원과 (02-2110-6744)

### 5.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시행

환경부 생활하수과 ☎ 02-2110-6891

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영업물량이 감소하여 폐업하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지원 및 대체 사무를 주선하는 “분뇨수집·운반업자 폐업지원 제도”가 시행됩니다.

- \* 10. 6일 부터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조례에 따라 지원금 및 용자 알선, 대체사무 주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	관계 부서
분뇨수집·운반업 폐업지원 제도	· 신규	·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·용자알선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	하수도법 [2011. 10. 6]	환경부 생활하수과 [02-2110-6891]
			환경부 생활하수과 [02-2110-6891]	

### 6.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

환경부 수도정책과 ☎ 02-2110-7662

금년 5월 26일부터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	관계 부서
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	· 신설	·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	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[2011. 5. 26]	환경부 수도정책과 [02-2110-7662]
			환경부 수도정책과 [02-2110-7662]	

### 7.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 ☎ 02-2110-6940

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신고 대상자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\* 7. 22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올라로스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	관계 부서
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	<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 > ·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·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- 오니[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] - 광재, 분진, 폐사, 도자기조각, 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를, 폐촉매,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[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] ·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	<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 > ·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▶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 폐기물과 배출자 신고대상 폐기물을 일원화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2011. 7. 22]	환경부 폐자원관리과 [02-2110-6940]
			환경부 폐자원관리과 [02-2110-6940]	

## 8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

폐자원관리과(☎ 02-2110-6929)

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1회/년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	관계 부서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	· 생활폐기물 대행할 수 있는 자만 시행 령에서 정하고 있음.	·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1회/년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	폐기물관리법 시행령(2011. 7. 24)	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02-2110-6929)

## 9.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

환경부 화학물질과(☎ 02-2110-7962)

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년 12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됩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	· 10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* 규제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	·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· 11. 12. 1부터 납, 카드뮴,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*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	취급제한·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(2011. 12. 1)	환경부 화학물질과 (02-2110-7962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 번</th> <th>취급제한물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말라카이트 그린 염류</td></tr> <tr><td>2</td><td>메틸브로마이드</td></tr> <tr><td>3</td><td>사염화탄소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</td></tr> <tr><td>5</td><td>폼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6</td><td>노닐페놀</td></tr> <tr><td>7</td><td>백석면</td></tr> <tr><td>8</td><td>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9</td><td>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0</td><td>납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연 번			취급제한물질	1	말라카이트 그린 염류	2	메틸브로마이드	3	사염화탄소	4	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	5	폼알데하이드	6	노닐페놀	7	백석면	8	테트라클로로에틸렌	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10	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 번</th> <th>취급제한물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말라카이트 그린 염류</td></tr> <tr><td>2</td><td>메틸브로마이드</td></tr> <tr><td>3</td><td>사염화탄소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</td></tr> <tr><td>5</td><td>폼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6</td><td>노닐페놀</td></tr> <tr><td>7</td><td>백석면</td></tr> <tr><td>8</td><td>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9</td><td>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0</td><td>납</td></tr> <tr><td>11</td><td>카드뮴</td></tr> <tr><td>12</td><td>크로뮴(6+) 화합물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◆ 취급제한·금지물질에 관한 규정</p>	연 번	취급제한물질	1	말라카이트 그린 염류	2	메틸브로마이드	3	사염화탄소	4	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	5	폼알데하이드	6	노닐페놀	7	백석면	8	테트라클로로에틸렌	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10	납	11
연 번	취급제한물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말라카이트 그린 염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메틸브로마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사염화탄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폼알데하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노닐페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백석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테트라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번	취급제한물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말라카이트 그린 염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메틸브로마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사염화탄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폼알데하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노닐페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백석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테트라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	카드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	크로뮴(6+) 화합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10.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

환경부 환경산업팀(☎ 02-2110-7757)

환경산업체간 협업 및 공동 기술개발, Test-Bed 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 전과정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체 및 지원시설을 집적화 하는 '환경산업 진흥단지'가 조성됩니다.

\* 10. 29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, 공공기관, 관련학회간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 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·개발 절차에 따라 환경산업 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	· 신규	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, 공공기관, 환경관련 학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환경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[2011. 10. 29]
			환경부 환경산업팀 [02-2110-7757]

### 11.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 ☎ 02-2110-6772)

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적시에 정화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정화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이를 위한 자원마련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\* 10. 6부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, 토양정화업체는 토양정화공제사업,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토양정화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	· 토양정화공제조합설립 근거 없음	· 토양정화공제조합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오염토양의 적시처리를 위한 자원 마련 및 기술개발 사업 등 가능	토양환경보전법[2011. 10. 6]
			토양지하수과[02-2110-6772]

### 12.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 ☎ 02-2110-6772)

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,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정화가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정화를 추진하고, 국유재산 등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시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·수용하도록 추가하여 오염토양의 조기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.

\* 10. 6부터 국가에 의한 토양정화 및 토양정화를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	· 국가에 의한 토양정화의 역할 근거 불명확	· 국가에 의한 토양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개정	토양환경보전법[2011. 10. 6]
			토양지하수과[02-2110-6772]

### 1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

환경부 생활하수과 ☎ 02-2110-6882)
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2010. 9. 8, 공포)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·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  관계 부서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	· 빗물은 수도법, 중수도,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하수도법 등에서 운영	·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[11. 6. 9] - 빗물이용, 중수도 및 하·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◆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	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[2011. 6. 9]
			환경부 생활하수과, [02-2110-6882]